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인도 포함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6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인도 포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인도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④ ~ ⑦ (생략)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 협의체¹⁾가 추천하는 사람이 대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현실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현행법은 대책위원회 외에도 여러 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²⁾, 아래 표와 같음.

-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위원회 등 비교]

구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중요사항 심의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협의
소속	국무총리	시·도	시·군·구
위원	위원장 2명 20명 이내 위원	위원장 1명 11명 이내 위원	위원장 1명 20명 내외 위원
기능 (또는 심의내용)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u>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u>	1.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 매년 수립 2.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별도 규정 없음
기타	실무위원회 강행규정	실무위원회 재량규정	규정 없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책위원회의 기능 중에는 학교폭력 관련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학교폭력 관련하여 교육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는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음.

따라서 교육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대책위원회에 포함된다면, 지역에서 요청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추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